연구비 사용지침

- ※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,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준용
- ※ 간접비는 기술개발과제에서 편성 불가
- 가. 비목별 주요 사용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구 분		ᆈᆸᅰᄮᅠᇧᇸᆌᄌ			
비목	세목	세부계상・집행기준			
		○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·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○ 계상기준 1.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(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)을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,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 <인건비 산정기준>			
		구	분	세 부 산 정 내 용	
		정부 출연	연봉제 적용기관	○ 연봉총액 × 참여율 ※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	
		연구 기관 및 특정연 구기관	연봉제 미적용 기관	○ 정부인정 12개 항목 × 참여율 - 기본급여(기본급, 상여금) - 정액급(기본연구활동비, 능률제고수당기본급) - 복리후생비(가족수당, 중식보조비, 자가운전보조비) - 법정부담금(퇴직급여충당금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	
직접비	인건비	기	타 기 관	○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× 참여율	
작십 미		 ※ 해당 과제 참여율 :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,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. 또한,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※ 연봉 			
		해 취 2. 정-	당기관 소속 업규칙에 의 무출연연구기	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,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 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	

구 분		ᆈᆸᆌᄮᆞᇧᇸᆌᄌ		
비목	세목	세부계상・집행기준		
비목	세목	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. 이 경우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. **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. 다만,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. ** 기획・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계상이 가능하다. 3. 대학교수,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,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. **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. **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% 이내에서 참여율계상이 가능하다. 4.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. ** 가고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.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		
		하는 연구원의 인건비(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 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) 라.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		
		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-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		
		마.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		

구분		세부계상・집행기준				
비목	세목			4		
		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고용계약서 등)를 제출한 연구인력 ※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(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) ○ 당초계획대비 20%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			
	학생 인건비	○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(리서치 펠로우 포함)을 포함)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-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(man-month)을 기준으로 계상한다. -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.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. ※ 학생 연구원 인건비 지급 기준(참여율 100% 기준)				
		학사과정	석사과정	박사과정		
			1,800,000원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 선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(2,500,000원 을 기준으로, 과제수행을 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		
	연구 장비 · 재료비	(기기·장비가 도착는 기기·장비(해당 보는 기기·장비(해당 되는 제외), 연구시 운영비 등 부대 경경우, 건축비, 부지 2. 시약(試藥)·재료 등 3. 시제품(試製品)·시 이 방사광가속기, 나노를 계상할 수 있다.	의 최종(단계) 종료 2개 남되어 검수완료)되어 해 남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설의 설치・구입・임치 비(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매입・조성비 등 포함 구입비 및 전산 처리・편 작품(試作品)・시험설비	반리비 제작경비 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: 없다.> · 영구 환경 구축비 등 OA 기기)		

구 분				
비목	세목	세부계상・집행기준		
	· 연구 활동비	○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.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※ 국외 출장여비는 국・공립 대학(단,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・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,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. 2.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・복사・인화・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,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. 전문가 활용비, 국내외 교육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・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번역료, 속기료 및 구독료, 기술도입비 등 4. 시험・분석・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 특허정보조사, 정보 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.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.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필요한 경비 <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>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, 차량 임차비, 유류비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 등※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, 청소비, 차량보험료, 경상피복비 등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・참가비		
	연구 과제 추진비	 ○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・비품의 구입・유지 비용 등 회의비(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)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○ 계상기준 국내 출장여비는 국・공립 대학(단,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) 및 국・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,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		

구 분		세부계상・집행기준	
비목	세목	741710 HO71E	
		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.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 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. 2.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은 연구실 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·비품의 구입·유지 비용을 말한다.	
		<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> -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	
		○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 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	
	연구 수당	○ 계상 및 사용기준 - 인건비(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・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)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.	
		○ 지급방법 -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 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	
	위탁 연구 개발비	○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○ 계상 및 사용기준 - 직접비, 간접비로 계상하되,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 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- 당초계획대비 20%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